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47	발의일자	2015. 6. 19 .
		발 의 자	이홍희 의원 외 9 명

1. 개정이유

○ 현행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근거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지원의 임의적 중단으로 인하여 안정성을 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3항(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및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에 따라 거창군 학교급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항)
- 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 다.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
- 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학교급식지원센터팀장을 추가하고, 위원의 직책명칭을 직제에 맞게 바로잡음.(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헌법」 제31조, 「학교급식법」 제3조~제5조, 제8조, 제9조
- 나. 예산 조치 : 미편성
- 다. 집행부의견조회 :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
- 라. 그 밖의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2015. 6. 12 . ~ 6. 18 .
 - (3)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로 하며,

제9조제3항 중 “창조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보건소장”을 “창조산업과장, 마을만들기과장, 보건소장, 학교급식센터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5. (생략)</p> <p>②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 ② (생 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u>창조정책과장</u>, <u>농촌활력과장</u>, <u>보건소장을</u>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u>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제8조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u>창조산업과장</u>, <u>마을만들기과장</u>, <u>보건소장</u>, <u>학교급식센터팀장을</u>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p>

현 행	개 정 안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 9. (생략) ④ ~ ⑥ (생략)	1 ~ 9. (생략) ④ ~ ⑥ (생략)

무상급식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요인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지원

○ 관련조문 : 제3조 ~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비용추계(매년 비슷한 규모의 예산소요)

[학생수는 2015. 3. 1. 현재]

구 분	연간소요예산 (천원)	산출기초 (평균단가×학생수×급식일수)	비 고
계	4,478,733		
유치원	304,699	2,570원 × 624명 × 190일	
초등학교	1,438,528	2,600원 × 2,912명 × 190일	
중학교	998,982	2,760원 × 1,905명 × 190일	
고등학교	1,736,524	3,130원 × 2,920명 × 190일	

나. 재원분담 예산추계

○ 거창군 50 : 교육청 50

[단위 : 백만원]

계	거창군	교육청	비 고
4,479	2,239.5	2,239.5	

○ 경상남도 25 : 거창군 35 : 교육청 40

[단위 : 백만원]

계	경상남도	거창군	교육청	비 고
4,479	1,119.7	1,567.7	1,791.6	

※ 2014년도 재원분담 = 4,483백만원

- 경남도 1,121(25%)/거창군 1,681(37.5%)/교육청
1,681(37.5%)

작성자 : 전문위원 박 완 목

관계법령

□ 「대한민국 헌법」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

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